

인천지방법원 2020. 9. 11 선고 2019나66975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인천지방법원 2020. 9. 11 선고 2019나66975 판결

인천지방법원 2019. 8. 27 선고 2018가소479720 판결

전 문

원고, 항소인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웰

담당변호사 김훈희, 김광미

피고, 피항소인B

변론 종결2020. 7. 3.

판결 선고2020. 9. 11.

제1심판결인천지방법원 2019. 8. 27. 선고 2018가소479720 판결

주 문

1.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
2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3.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C은 원고의 중개로 2016. 7. 15. 피고와 사이에, 피고가 운영하던 인천 서구 D 소재 공장이 E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수용되면서 피고에게 공급될 "E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권리"를 매매대금 15,000,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(이하 '이 사건 매매계약'이라고 한다)을 체결하고, 피고에게 매매대금 15,000,000원을 지급하였다.

나. F공사는 2017. 10. 16. 위 공장의 영업시설물 등이 2010. 2. 9. 화재로 소실되었고, 사업구역 내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.

다. C은 2019. 5. 14. 원고에게 "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매매대금 15,000,000원의 반환청구채권"을 양도하고,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(이하 위 채권을 '이 사건 채권', 위 채권양도를 '이 사건 채권양도'라고 한다)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3, 4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제1심 법원의 F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

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.

가.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이다.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,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,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

한다(대법원 2018. 10. 25. 선고 2017다272103 판결 등).

나. 살피건대, 갑 제3, 4, 5,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채권양도는 원고와 C 사이에 원인관계 없이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신탁법 제6조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.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무효인 소송신탁에 기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.

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C과 피고이므로, 이 사건 매매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(주위적 청구)이나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(예비적 청구)은 모두 C에게 귀속된다.

② 원고는 2018. 7. 18.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2019. 5. 20.에 이르러서야 C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는바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. 원고는 C을 위하여 자신이 중개한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정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,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문제되자 소송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.

③ C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2019. 5. 14.에서야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.

④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인 2018. 2. 28. C의 언니 G 명의의 계좌로 매매대금 15,000,000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, 그로부터 약 1년 3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점,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허위 주장한 점에 비추어 보면,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,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,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이광우

판사오희록

판사윤성현